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 국제 산업 안전보건 동향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에서 발간하는

분기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



# CONTENTS

## 1

###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계층 보호

[독일]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4
[유럽]	플랫폼종사자 안전보전에 관한 EU지침(안) 개선사항 및 과제	7

## 2

###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미국]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	10
[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12
[싱가포르]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	16
[호주]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	18
[캐나다]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전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20
[미국]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착용 허용 규칙 시행('24.10~)	22

# 1

##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계층 보호

독일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유럽

플랫폼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EU지침(안)  
개선사항 및 과제

## [독일]

## 1

##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 배경

- 독일은 독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필요에 맞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위하여 독일 공공 및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 역량강화전략(Offensive Mittelstand, 이하 “OM”) 이니셔티브를 발족한 바 있음(2006년)
  -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공급망 실사 등 분야에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원, 시간, 기술적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쟁력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동 이니셔티브가 추진되었음
  - 현재 약 400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주체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업단체, 길드 및 수공업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전문경영단체 및 연구소 등임
- OM은 독일의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무도구를 개발하여 경영지원, 생산성과 예방관리강화, 비용효율평가 및 인증 등을 추진함
- OM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산업안전보건 자체평가모델(OM-Self-Assessment OSH)은 중소기업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함

공급망  
실사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 OM은 공급망실사법\* 제정에 따라 독일 연방 정부, 주 정부, 산재보험 기관, 사회적 파트너와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진단도구 GDA-ORGCheck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음
  - \* 2023년부터 독일에서 시행된 공급망실사법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인권과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공급망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음
  - 동 모델의 목표는 저비용의 자가진단도구를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조직을 평가하는 것
  - GDA-ORGCheck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기업은 데이터베이스에 2년간 등재되고 자가진단완수 로고를 부여받아 홍보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



## [독일]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 GDA-ORGcheck는 6개의 모듈로 구성된 기본버전(basic)과 15개의 모듈로 구성된 전체버전(full)의 진단도구로 각 모듈은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버전의 모듈은 기업의 책임과 임무, 안전보건활동과 의무, 의료 및 안전관련 지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련 자격,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6개이며,
  - 전체버전은 기본버전의 6개 모듈을 포함하여, 규제요구사항, 법률, 고용주의 안전보건 준수 지원, 의사소통, 산업보건관리, 계획 및 조달, 공급업체, 임시직 근로자, 응급처치 및 비상대응 등 총 15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각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즉각 대응 필요(빨강), 대응필요(노랑), 현재 대응불필요(초록)를 선택함

### GDA-ORGcheck 진단방법(예시)

Home Check > basic version >

## GDA-ORGcheck (OM-Praxis A-3.1)

### Basic

**SELECTION OF BUILDING BLOCKS**

- 1 RESPONSIBILITY AND DELEGATION OF TASKS
- 2 CONTROL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TASKS
- 3 CARE/SIFA/COMPANY DOCTOR/ASA
- 4 QUALIFICATION
- 5 RISK ASSESSMENT
- 6 INSTRUCTION

**MODULE 1: RESPONSIBILITY AND ASSIGNMENT OF TASKS**

Show  
 only one checkpoint of the brick at a time Show all checkpoints per brick

**MY CHECKBOX**  
 You have not yet worked on a building block.

**WHAT DOES IT LOOK LIKE IN YOUR COMPANY?**

1.1 Are all managers informed about their dutie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ION**

Urgent need for action  
 Action  
 No need for action at present  
 Not Applicable

**WHAT DOES IT LOOK LIKE IN YOUR COMPANY?**

1.2 Are the tasks and responsibilitie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the necessary powers clearly defined and known?

**ACTION**

Urgent need for action  
 Action  
 No need for action at present  
 Not Applicable

WHAT DO I DO, WHAT DO I DO?

- 진단 후에는 결과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각 모듈에 대한 기업의 수행사항이 점수화(10점 만점 기준)되어 표출됨
  - 즉각 대응 필요(빨강) 및 대응필요(노랑)에 응답한 경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음

[독일]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법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 개발

GDA-ORGCheck 진단 결과보고서(예시)

**1. 책임 및 업무 위임**

모든 고용주는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한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산업 보건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자는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듈 1: 나의 결과**  
8.3점  
10점 만점 중

귀사의 상황은 어떤가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1 모든 관리자에게 산업 보건 및 안전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나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2 산업 보건 및 안전의 업무와 책임, 필요한 권한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알려져 있나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1.3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업무와 책임, 필요한 권한이 서면으로 부여되어 있나요?

대응이 미흡한 항목에 대한 조치사항 기입(예시)

MODULE 1: RESPONSIBILITY AND ASSIGNMENT OF TASKS

TOPIC	ACTION	Define my actions
<p>1.3 Are the tasks and responsibilities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nd the necessary powers transferred in writing?</p> <p>Measures:</p>	<p><input checked="" type="radio"/> Urgent need for action</p> <p><input type="radio"/> Action</p> <p><input type="radio"/> No need for action at present</p> <p><input type="radio"/> Not Applicable</p>	<p>Priority: 1</p> <p>Responsible: _____</p> <p>Until: _____ Control: _____</p> <p>Insert measures</p>

WHAT DO I DO, WHAT DO I DO?  
PRACTICAL AID  
LEGAL BASIS  
TERMS

**시사점**

GDA-ORGCheck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첫단계로써,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를 평가시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른 참여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참고문헌**

1. GDA-ORGCheck, <https://www.gda-orgcheck.de/daten/gda/index.htm>
2. ISSA, VISION ZERO: Strategy & Implementation – Together for Life(Vol. 2), 2024.9.

## [유럽]

## 2

## 플랫폼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EU지침(안) 개선사항 및 과제

## 배경

- 다양한 경제 부문이 플랫폼화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EU 내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약 2,800만 명에서 2025년 4,3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플랫폼 노동은 저임금 및 비정규직, 불안정성, 알고리즘 통제 및 감시, 데이터 보호 문제, 고용 권리 및 보호 부족, 제한된 집단 대표성 등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EU 지침(이하 지침)\*은 플랫폼 노동을 규제하려는 EU 최초의 시도
  - \* (COM/2021/76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 지침의 초안은 2021년 12월 9일에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되었고, 2024년 3월 11일 유럽 의회와의 절충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

## 주요내용

## ① 고용 상태

- 대부분의 플랫폼 근로자는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대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정\*의 적용이 제한됨
  - \* 최저임금, 근로시간,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 사회보장
- 지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플랫폼 근로자의 정확한 고용 분류를 촉진하는 것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고용으로 간주\*하는 법적 추정을 확립하는 것임
  - \* 고용으로 간주하는 조건에 대한 정의는 개별 회원국에 맡김

## ② 알고리즘 관리

- 디지털 노동 플랫폼은 알고리즘 및 기타 자동화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작업을 할당, 지시, 통제 및 모니터링하며, 종종 인간의 감독이 거의 없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한적
- 지침은 알고리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일련의 안전장치를 도입함
  - 플랫폼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자동화된 의사 결정의 사용에 대해, 특히 근로조건 및 직장 내 차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간의 감독과 평가를 받아야 함
  - 근로자는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취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인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플랫폼 근로자와 회원국에게 알리고 협의하여 플랫폼으로부터 적절한 보고 채널을 구축하도록 규정
    - (1) 안전보건과 관련된 자동화된 의사 결정 및 모니터링의 위험성 평가

## [유럽] 플랫폼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EU지침(안) 개선사항 및 과제

(2)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절한지 평가

(3)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 도입

- 근로자(대표)와 공유해야 하는 영향 평가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식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해야 함

### ③ 투명성, 집행 및 교섭단체

- 플랫폼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소통 채널 또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플랫폼이 계약 조건이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는 구제를 받기 어려움
- 지침은 근로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는 등 법적 구제를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며, 단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음

### 개선사항 및 과제

-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많은 플랫폼 근로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하는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 다른 국가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지침은 수급업체의 사용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미 많은 분야(예: 음식 배달 플랫폼, 차량 호출 플랫폼)와 국가에서 수급업체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의 사용은 근로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희석시킬 수 있음
- 플랫폼은 종종 독점적인 규칙이나 기밀 유지라는 주장 뒤에 알고리즘의 기능을 숨기며, 동시에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에는 기술적 장애물이 존재함
- 지침은 집단 대표와 관련하여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 대표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 플랫폼 종사자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권한과 역량이 제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음
-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문 지식이 필요함

### 시사점

- 지침은 EU 전역의 수백만 명의 플랫폼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각 회원국의 이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EU-OSHA) THE EU DIRECTIVE ON PLATFORM WORK: IMPROVEMENTS AND REMAINING CHALLENGES RELAT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2

## 국가별 산재예방 정책 및 활동

미국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

프랑스

2022-2025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정교화

싱가포르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

호주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

캐나다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미국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착용 허용 규칙 시행('24.10~)

[미국]

1

#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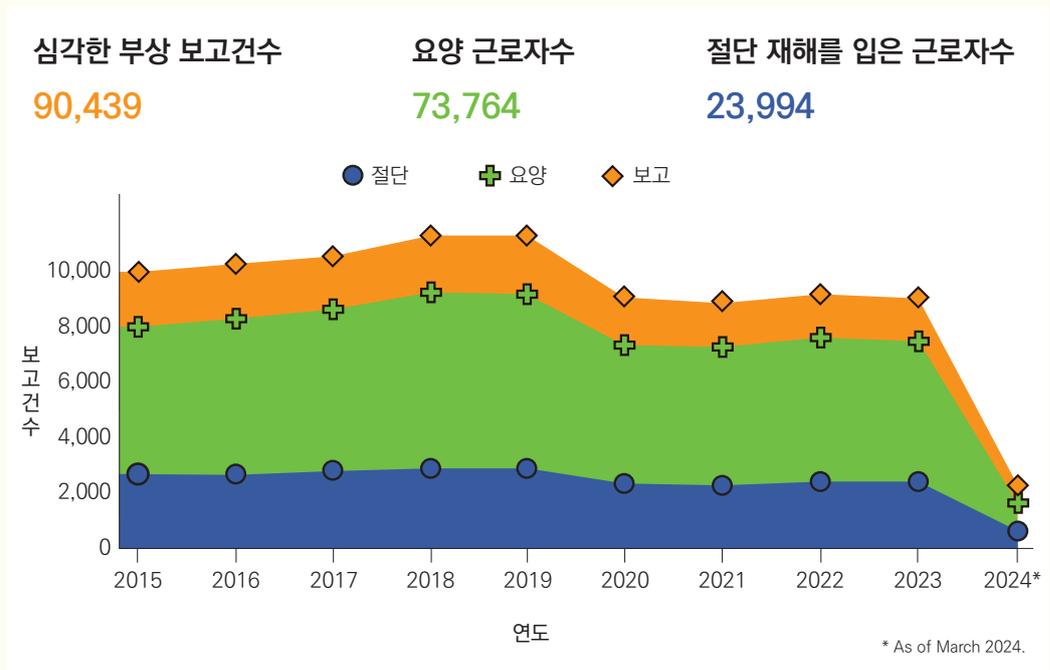
- 2024년 9월 4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사용자가 심각한 부상\*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주(州)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된 추세를 볼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공개함
  - \* 심각한 부상(Severe Injury) : 절단, 실명,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 \*\* 사업주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OSHA에 보고해야 함

주요내용

- 심각한 부상 보고서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자는 연도별, 산업별, 주별, 부상·질병 분류체계 코드별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대시보드에는 2015년 이후 연방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보고한 모든 심각한 부상 사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 OSHA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시보드를 통해 재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업무상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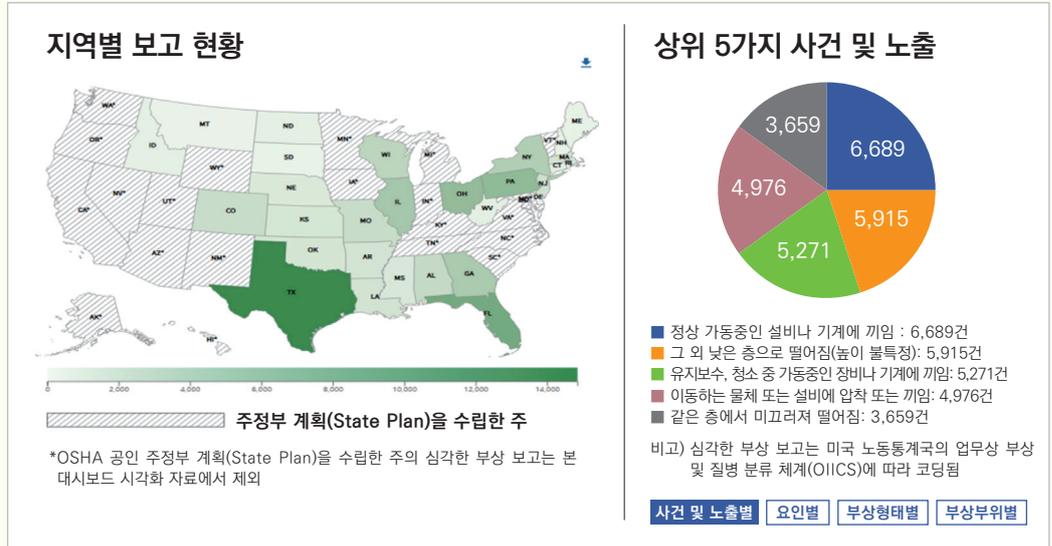
제공화면

- (연도별) 심각한 부상 보고건수, 요양 근로자수, 절단 재해를 입은 근로자수



[미국] OSHA, 심각한 부상 발생 현황에 대한 대시보드(웹사이트) 공개

- 지역별 보고 현황, 각종 보고 통계(사건 및 노출별, 요인별, 부상형태별, 부상부위별)



- 세부 보고이력(일자, 지역, 사업장명)

Filter Criteria: None Download Selected Data

Attention: Table rows are limited to 1,000. Total results are 90,439 records. Select the "Download Selected Data" button to download the data with your selected filters applied. For the full SIR dataset, select "Download the full SIR data set" at the top of the page.

Show  entries Search:

Event Date	NAICS	City	State	Establishment Name
03/31/2024	424120	UNION	MISSOURI	
03/31/2024	484121	MIDLAND	TEXAS	
03/31/2024	488490	AURORA	COLORADO	STYCS LLC
03/31/2024	311612	DENMARK	WISCONSIN	
03/30/2024	441310	NEWARK	OHIO	ts, Inc.
03/30/2024	312111	TRUESDALE	MISSOURI	es
03/30/2024	517311	NAPLES	FLORIDA	
03/30/2024	311611	FREMONT	NEBRASKA	ts, Inc.
03/29/2024	623110	BAY CITY	TEXAS	s in Healthcare, Inc.
03/29/2024	532310	POMPANO BEACH	FLORIDA	nc.

Showing 1 to 10 of 1,000 entries Previous  2 3 4 5 ... 100 Next

## 시사점

- OSHA의 심각한 부상 보고 대시보드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촉진하고, 맞춤형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출처**

- (OSHA) US Department of Labor launches Severe Injury Report dashboard, providing interactive view of injuries across states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trade/20240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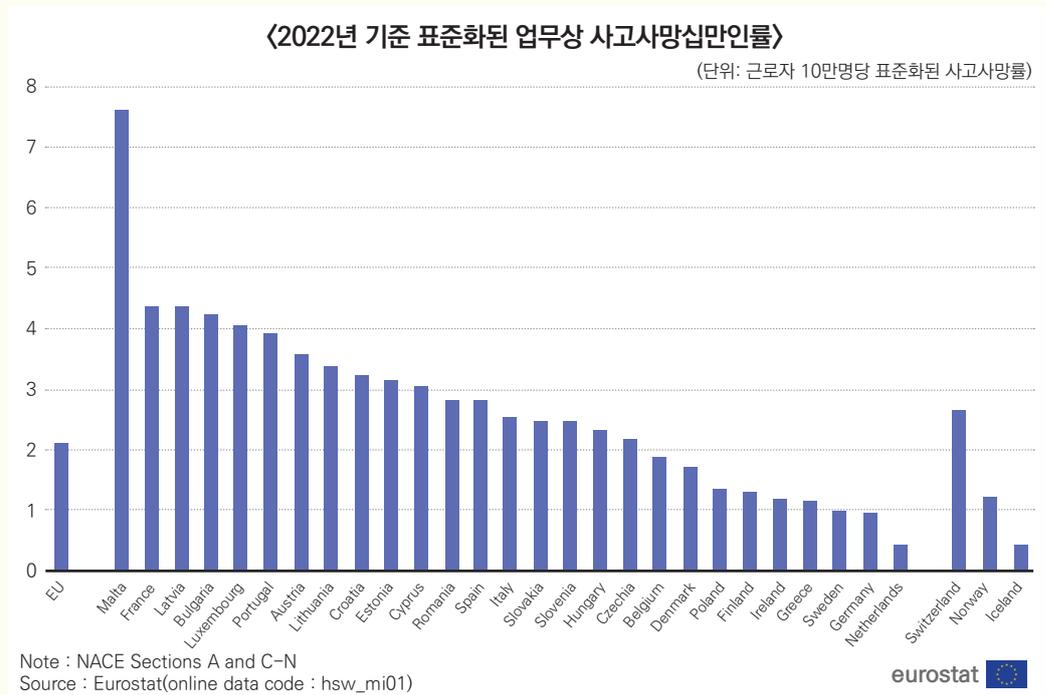
[프랑스]

# 2

##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배경

- 프랑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특히 노동보건연대부의 주요 임무로 설정하여 2022년부터 중대산업재해 및 사망사고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총 789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며, 표준화된 사고사망십만인율 4.45를 기록



- ※ 표준화된 사고사망십만인율(strandardized incidence rate)은 국가 간 비교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각 국가의 경제 활동 구조 차이를 조정한 수치로, 단순 사고율(incidence rate)은 국가별 고용 인구 대비 사고 건수를 계산하는 반면, 표준화된 사고율은 EU 전체 경제 활동의 비율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비교적 공정한 안전 수준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시행 2년 후 중간평가 결과 산업보건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직업훈련기관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기초교육과정에 정립되었고, 외국인, 파견·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식제고 이니셔티브(다국어)를 전개하였음
  - 2023년 하반기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일반대중 및 기업 관계자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 중간평가를 바탕으로 공동의 예방 노력을 강화할 새로운 대책을 포함하여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 프랑스의 산재사망 사례 중 거의 절반이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직업적 요인에 대해 깊이있게 다루며,
  - 청년 및 임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정교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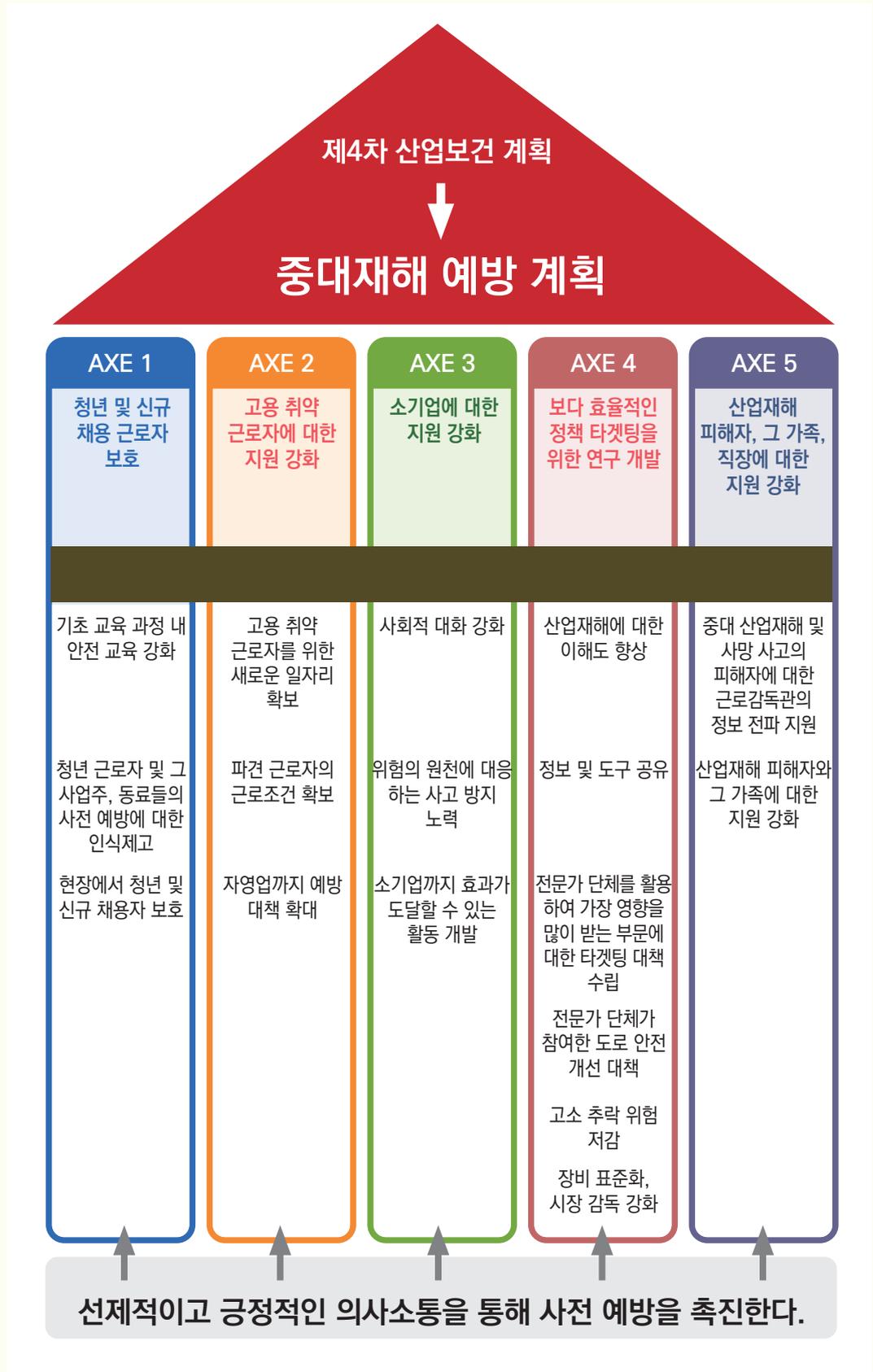
## [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개요

- 중대재해 예방 계획은 총 5개의 기둥 및 핵심정책목표 19개와 이를 아우르는 1개의 횡단축으로 구성
  - 5개의 기둥 : ①청년 및 신규채용 근로자 보호, ②고용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③중소기업 지원 강화, ④효율적인 정책 타겟팅을 위한 연구개발, ⑤산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직장에 대한 지원 강화
  - 핵심정책목표 : 각 기둥에는 2~6개의 핵심정책목표가 할당되어 있고, 각 핵심정책목표는 최대 3개의 대책 방안으로 구성
  - 횡단축 : 선제적으로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전 예방을 촉진
- 기둥1. 청년 및 신규채용 근로자 보호 : 중대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 예방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학령기부터 성인에게까지 지속
- 기둥2. 고용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강화 : 특정 고용 형태(임시직, 계절직, 파견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노출정도가 높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위험을 외주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권리와 산재예방교육 및 인식제고 측면의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에게도 안전보건서비스(SPST) 제공
- 기둥3. 중소기업 지원강화 : 중소기업 운영 환경과 근로자의 노출위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단체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의 협업 등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 프랑스 중소기업의 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 및 사망 사고는 전체 사고의 26%를 차지
- 기둥4. 정책타겟팅을 위한 연구개발 : 관련 전문가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를 토대로 위험을 식별·분석하여 산재 예방 정책 마련
- 기둥5. 산재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직장에 대한 지원 강화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더욱 체계적인 정보와 지원 제공
- 횡단축. 자국내 2,820만명의 근로자들을 특성별(고용상태, 활동분야, 정보네트워크, 사회문화적 배경 등) 대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산재로 인한 인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정 대상 집단에 특화된 메시지를 전달



[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 [프랑스]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2022-2025  
중대재해  
예방 계획  
정교화

- 프랑스는 2024년에 동 계획을 정교화하기 위해 산재취약계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인식제고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8개의 핵심정책목표를 신설

연번	기둥	신규 핵심정책목표
1	기둥 1	핵심정책목표 2. 청년근로자, 고용주 및 동료 대상 산재예방인식 제고
2	기둥 2	핵심정책목표 4. 고용취약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확보
3	기둥 3	핵심정책목표 8. 위험의 원천에 대응하는 사고 방지
4	횡단축	핵심정책목표 16. 일반대중 인식제고, 근로자/고용주 대상 소통활동
5	기둥 4	핵심정책목표 18. 직업성 질병 이해 및 예방
6	기둥 4	핵심정책목표 19. 폭염과 관련된 직업상 위험에 대한 대책
7	기둥 5	핵심정책목표 20.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8	기둥 5	핵심정책목표 21.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참고문헌

- 프랑스 노동보건연대부,  
Le plan de prévention des accidents du travail graves et mortels
- Eurostat, Fatal accidents at work,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Accidents\\_at\\_work\\_statistic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Accidents_at_work_statistics) (접속일: 2024.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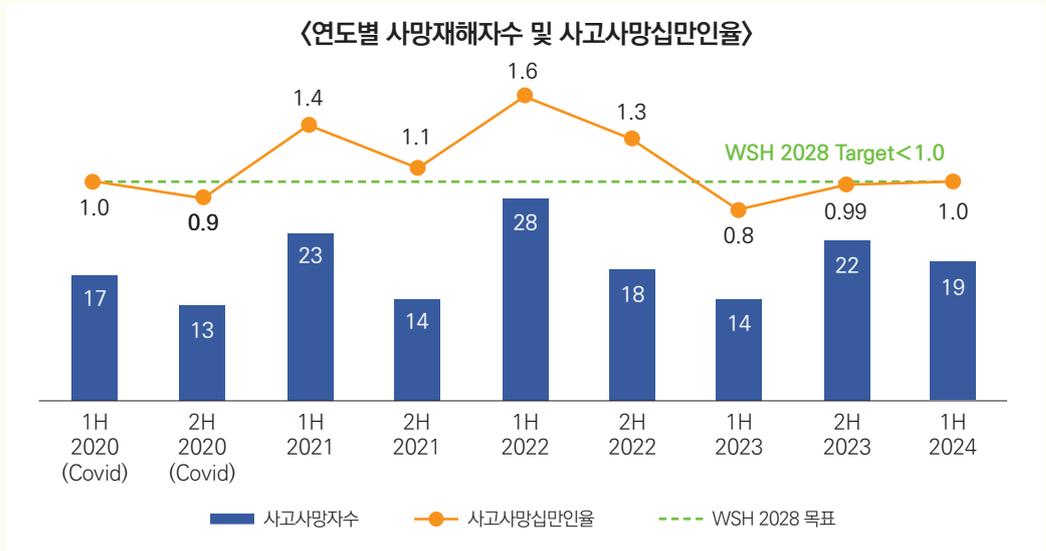
[싱가포르]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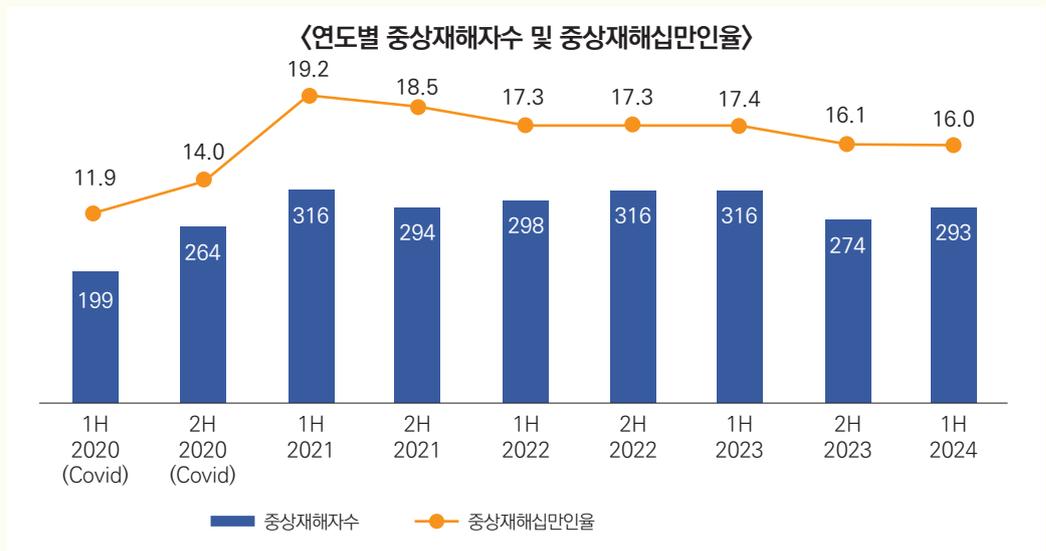
##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

### 배경

- 싱가포르의 산업안전보건 성과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계속 개선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사고사망십만인율은 1.0으로, 2023년 처음 달성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등 4개 OECD 국가만이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함
  - \* 코로나19로 업무에 차질이 있던 2020년은 제외



- 2024년 상반기 중상재해십만인율은 16.0으로, 2023년 하반기 16.1과 일치하며, 2023년 상반기 17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인력부(MOM), 예방·감독 활동을 통한 재해예방 성과 지속 유지

### 주요 개선사항 및 노력

-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은 2024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사망 및 중상재해의 3대 원인에 해당됨
  - 건설업 및 제조업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세 산업서 발생한 사망 및 중상 재해의 총 비율은 2023년 상반기 63%에서 2024년 상반기 54%로 감소
- 건설업은 여전히 사망 및 중상재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26%)하며, 대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 및 중상재해자수는 2024년 상반기 31건으로, 전년 동기 28건 대비 소폭 증가
  - 그럼에도 이는 상반기의 43건에 비해 낮은 수치이며, 다기관 산업안전보건 태스크포스(MAST)는 2024년 초중반에 시행되는 추가 안전 책임, 집중 및 권한 부여(SAFE) 조치를 통해 건설 부문의 안전보건 기준을 더욱 강화\*함
    - \* 공공부문 건설 및 건설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보건 요건 강화('24. 4. 시행), 계약금액 500만 달러(약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비디오 감시시스템 의무화('24. 6. 시행)
- 제조업 부문에서도 사망 및 중상재해자수가 2023년 상반기 92건에서 2024년 상반기 60건으로 크게 감소
  - 이는 2023년 10월 시행된 보다 엄격한 검사와 벌점제도 덕분인 것으로 보임
- 인력부는 이러한 진전에도 집행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에 건설업, 제조업, 해운업 등 고위험 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걸쳐 3,000건 이상의 감독\*을 실시하였으며,
    - \* 일반 작업장 안전 외 미끄러짐, 넘어짐 및 떨어짐, 기계 안전, 고소 추락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집중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규정에 따라 7,000건 이상의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
    - \* 130만(약 13억원) 달러가 넘는 673건의 벌금과 22건의 작업중지 명령 포함

### 시사점

- 싱가포르가 달성한 성과는 법적 규제의 엄격한 집행, 첨단 기술의 활용,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인식 제고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줌

#### 출처

- (MOM) Singapore's WSH performance in 1H2024 shows sustained progress from 2023

<https://www.mom.gov.sg/newsroom/press-releases/2024/1009-singapore-wsh-performance-in-1h2024-shows-sustained-progress-from-2023>

## [호주]

## 4

##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

## 배경

- 호주 연방 산업안전보건부장관은 2024년 7월 1일부로 인조석 벤치탑, 패널 및 슬래브의 제조, 공급, 가공 및 설치를 금지한다고 발표('23.12.13)
  - 최근 몇 년간 호주 내 인조석으로 인한 규폐증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조석 가공(절단, 연삭, 연마 등) 과정에서 호흡성 결정질 실리카(Respirable Crystalline Silica, RCS)에 노출된 근로자의 발병률이 높았음
  - 청년 근로자의 규폐증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방, 주 및 지역별 산업안전보건부장관들은 만장일치로 인조석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데 동의

## 주요내용

- 표준 작업안전보건 규정, 529D(인조석 벤치탑, 패널 또는 슬래브와 관련된 작업 - 금지사항)

Mode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Engineered Stone) Amendment 2024  
Regulation 529D Work involving engineered stone benchtops, panels or slabs - prohibition

## ① 금지사항

- 사업을 운영하거나 수행하는자(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a person undertaking, PCBU)가 인조석 벤치탑, 패널 또는 슬래브의 제조, 공급, 가공 또는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 지시 또는 근로자가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함
- 또한 PCBU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유형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용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

## ② 적용제외

- 인조석의 정의에서 제외된 다음의 인공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 |                       |                   |
|-----------------------|-------------------|
| ▶ 콘크리트 및 시멘트 제품       | ▶ 지붕 타일           |
| ▶ 벽돌, 포장재 및 기타 유사한 블록 | ▶ 그라우트, 모르타르 및 렌더 |
| ▶ 세라믹 벽 및 바닥 타일       | ▶ 석고 보드           |

- 벤치탑, 패널 또는 슬래브 형태가 아닌 완제품 공학석 제품(예: 보석, 정원 장식품, 조각품 및 주방 싱크대)은 금지되지 않음
- 다른 성분과 결합되지 않은 천연석 제품(천연 화강암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천연 석재를 사용하는 PCBU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해야 하며 천연 석재 가공 시 RCS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해야 함

## [호주] 세계 최초 인조석(Engineered stone) 제조 등 금지 조치 시행('24.7~)

## 시사점

- 호주의 인조석 규제는 규폐증을 비롯한 폐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며, 사업주에게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함
- 산업 전반에 걸쳐 원재료의 안전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조석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됨

## 참고(출처)

- World-first engineered stone ban is now in effect to protect workers (SafeWork Australia, '24.7.1.)
- Engineered stone prohibition Guidance for PCBU's (SafeWork Australia, '24.9.)



## [캐나다]

## 5

##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 배경

- 캐나다의 세 개 주(州)에서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투자하도록 하는 대안적 선고 방식을 실시하고 있음
  - 사망 또는 부상을 초래한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에 재정적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게는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
  - 앨버타,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주에서 ‘창의적 선고’를 하는 대안적 접근방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주요내용

- 사법부가 창의적인 형량을 권고하기 위해 판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명령은 본질적으로 징벌적이어야 함
  - 위반과 취해진 조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그 혜택이 사업주의 잘못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취해진 조치는 환경을 개선하거나 대중에 대한 위험 수준을 줄여야 함
  -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현재의 업계 표준을 분명히 뛰어넘어야 함
-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다음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연구 프로그램
  - 산업안전보건 및 관련 분야의 연구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
  - 근로자 안전보건 이니셔티브를 위한 비영리 단체 지원
  - 기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위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목적

## 관련사례

## 사례 1 Isolation Equipment Services

2022년 1월, 앨버타주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자가 오버헤드 크레인에서 설치하던 밸브 보닛이 리깅에서 분리되면서 작업자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 발생

- 회사는 36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억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1,000 캐나다 달러만 부과되었고, 나머지 35만 9천 달러는 신규, 청년, 무경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됨

## [캐나다] 산안법 위반 시 벌금 대신 안전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창의적 선고(Creative Sentence)

## 사례 2 Boucher Bros. Lumber

2022년 9월, 앨버타주 목재 및 건축자재 사업장에서 목재 대패를 사용하던 직원이 손 부상을 입음

- 유죄를 인정한 회사는 공장 안전교육 캠페인 기금으로 앨버타 임산물 협회에 10만 2,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1억1천만원)를 지불하며, 여기에는 목재 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동영상 개발이 포함됨

## 사례 3 Syncrude Canada

2021년, 근로자가 굴삭기로 제방을 쌓던 중 굴삭기가 서 있던 독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 발생

- 법원은 데이비드 앤 조안 린치 엔지니어링 안전 및 위험관리 학교, U알버타 지질공학 센터, 앨버타 시 보건안전협회에 39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3억8천만원)를 지불하라고 명령

## 사례 4 Marathon Underground Constructors Corporation

2022년 3월, 건설 현장에서 말뚝 구멍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음

- 회사는 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앨버타 건설안전협회에 14만 4천 캐나다 달러(한화 약 1억4천만원)를 납부하였고, 전용된 자금은 일련의 교육 동영상과 작업전 안전 점검(툴박스 토크) 리소스를 개발하는 데 사용

## 시사점

- 캐나다의 창의적 선고 사례는 산안법 위반에 대한 단순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보건 증진에 목적을 둔 혁신적인 대안임
- 또한, 사업장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참고(출처)

- Creative sentences – a win-win for advancing OSH? (IOSH Magazine, '24.9.17.)

## [미국]

## 6

## 근로자의 자발적 개인보호구 착용 허용 규칙 시행('24.10~)

## 배경

- 워싱턴주에서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을 허용하는 영구적 규칙\*을 채택함

\* RULE-MAKING ORDER CR-103P('24.8.20.)

- 현행 워싱턴주 노동국 산업안전보건부 소관 표준\*을 개정하여 소음, 먼지 또는 잠재적인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는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WAC 296-155(건설 작업 안전 기준), WAC 296-307 (농업 안전 기준), WAC 296-807 (필수 안전보건 규칙)

## 주요내용

- 채택된 규칙은 다음과 같은 안전 요건을 정함

-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적절하고 안전한 개인보호구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은 작업 환경에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됨
-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이 사업주의 보안 요건을 위반하여서는 안 됨
- 사업주는 개인보호구의 자발적 사용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용을 위해 보호구를 구매, 보관, 유지 또는 제공할 필요는 없음

## 시사점

- 본 규칙은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권리 보장을 의미함
-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는 재해 예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참고(출처)

- Washington state adopts measure on the voluntary use of PPE (Safe+Health Magazine, '24.9.9.)
- Rule-making order CR-103P (Washington State, '24.8.20.)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단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Tel. 052.7030.745 Fax. 052.7030.326

E-mail. overseas@kosha.or.kr

www.kosha.or.kr(Kr) | [http://www.kosha.or.kr/english/index.do\(En\)](http://www.kosha.or.kr/english/index.do(En))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